

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

제정 2008. 11. 19 조례 제 965호
일부개정 2017. 8. 7 조례 제1685호
일부개정 2019. 11. 8 조례 제1972호(제명개정)
일부개정 2021. 11. 3 조례 제2194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출생률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용인시민의 출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7. 8. 7, 2019. 11. 8, 2021. 11. 3>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출산지원금”이란 용인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.
2. “출생아 등”은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는 출생아 및 「입양특례법」 제15조에 따른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「영유아보육법」 상의 영유아를 말한다.

[전문개정 2021. 11. 3]

제3조(지원 대상)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(이하 “지원 대상자”라 한다)는 출생아 등을 신고하는 부모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 <개정 2021. 11. 3>

1. 「주민등록법」 제10조에 따라 용인시에 주민등록의 신고를 하고 출생·입양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. 다만, 출생·입양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18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 될 때까지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지원대상이 됨
2. 지원 대상자와 출생아 등이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

[전문개정 2019. 11. 8]

[제목개정 2021. 11. 3]

제4조(지원 기준) ①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

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첫째 자녀: 출산지원금 30만원
2. 둘째 자녀: 출산지원금 50만원
3. 셋째 자녀: 출산지원금 100만원
4. 넷째 자녀: 출산지원금 200만원
5. 다섯째 자녀 이상: 출산지원금 300만원

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녀의 구분은 지원 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자가 재혼한 사람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자녀 중 지원 대상자와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다.

④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별로 각각 지원한다.

[전문개정 2019. 11. 8]

제5조(지원신청 등) ① 읍·면·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고인이 지원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8. 7, 2019. 11. 8>

② 지원 대상자는 출생·입양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관할 읍·면·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신청인은 행정기관의 공부(公簿), 행정전산망 자료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을 소명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8. 7, 2019. 11. 8>

1. 「임신·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」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(이하 “신청서”라 한다)

2. 신청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
3. 통장 사본

3의2. 삭제 <2019. 11. 8>

3의3. 삭제 <2019. 11. 8>

4. 삭제 <2019. 11. 8>

5. 삭제 <2019. 11. 8>

[제목개정 2021. 11. 3]

제6조(지원 절차) ① 읍·면·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원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8. 7, 2019. 11. 8>

② 읍·면·동장은 매달 접수한 신청서 중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8. 7, 2019. 11. 8>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후 출산지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25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신청 계좌로 지급하거나 용인시가 발행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8. 7, 2019. 11. 8, 2021. 11. 3>

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 <개정 2017. 8. 7, 2019. 11. 8>

[제목개정 2019. 11. 8]

제6조의2 삭제 <2021. 11. 3>

제7조(출산친화 문화 조성) 시장은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출산 등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
2. 출산용품 등 출산가정 지원
3. 저출산 극복대책으로 문화·여가생활 비용 등 다자녀가정 지원

[본조신설 2021. 11. 3]

제8조(환수조치 및 기록) ①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8. 7, 2019. 11. 8>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대장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8. 7, 2019. 11. 8>

[제목개정 2017. 8. 7]

[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1. 11. 3]

제9조(출산지원금 신청대상 등 비치) 읍·면·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산지원금 신청대장을,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대장을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11. 8>

[전문개정 2017. 8. 7]

[제목개정 2019. 11. 8]

[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. 11. 3]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<개정 2019. 11. 8>

[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. 11. 3]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) 제3조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2017. 8. 7 조례 제1685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출산장려금 지원신청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금의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.

부칙 <2019. 11. 8 조례 제1972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출산지원금 지원 기준에 대한 적용례)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출산장려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으로 본다.

부칙 <2021. 11. 3 조례 제2194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 삭제 <2017. 8. 7>

[별지 제2호서식] <개정 2019. 11. 8>

출산장려금 지원대장

연번	지원대상자 (부 또는 모 등)		출생아		주 소 (전화번호)	거주기간 (년, 월)	자녀 순서	비고
	성 명	생년월일	성 명	생년월일				

[별지 제3호서식] <개정 2019. 11. 8>

출산지원금 지원대장

연번	지원대상자 (부 또는 모 등)		출생아		주 소 (전화 번호)	자녀 순서	거주기간 (년, 월)	지원액 (만원)	은행명	입금 계좌 번호	신청일	비고
	성 명	생년월일	성 명	생년월일							지급일	